

1. 의결주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안 제2조, 제3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등록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양도·양수 등 원활한 지위 승계를 위하여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를 규정함

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안 제5조, 제6조)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라. 생활물류 센터의 기능 및 설치·관리(안 제7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활물류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함

마.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기준(안 제8조)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지급여력금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바. 수수료(안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수료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 충족여부 재검토) ① 법 제5조제4항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② 택배서비스사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재검토를 받고자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재검토 시점에 맞추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제5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활

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의 신뢰성
2. 생활물류서비스의 친절성
3.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응성
4.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서비스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및 설치·관리)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접근성 및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선정
2. 충분한 주차 공간

3.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편리하게 생활물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채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요구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요구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